

## 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직 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1일

국무조정실장

### 1.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

지원코드	임용직급	인원	임용기간	근무예정부서 (근무지)
운전	운전서기보	1명	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적용	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(서울)

### 2. 주요직무내용

채용분야	주요 담당업무
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기관장 운전 수행</li><li>○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(일상점검, 운행관리 등)</li><li>○ 기관 주최 행사 운영 지원 등</li><li>○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</li></ul>

### 3. 근거법령

-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8308호)
-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32627호)
-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32998호)
- 공무원임용규칙(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)
-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)

## 4. 채용자격요건

### ① 기본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으며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】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】

제33조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## 【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5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
② 응시자격요건 : **[별지 1호] 직무기술서(응시자격요건) 참조**

**응시 자격 요건**

-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

- 운전면허는 **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**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,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

③ 우대요건 : **[별지 1호] 직무기술서(우대요건) 참조** 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**우대 요건**

- **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직 근무경력(연차별 차등우대)**
  - 기관장 및 임원 운전 근무경력(경력 소지여부)
  - 무사고 이력, 교통법규 준수 이력 포함 (사고 또는 위반 건수별 불이익)
- 자동차 정비·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(자격증 소지여부)
-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자 (이수 여부)

○ **경 력 (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경력만 인정)**

- ‘경력’은 **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·사업자등록업체**에서 **운전직**으로서 **승용차 또는 승합차**(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]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)를 운전한 경력\*으로, **경력증명서\*\* 제출 전에 한해 인정**

\* **영업(판매)직**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, 응시자 본인이 **개인사업자**로 근무한 경력, **화물차 및 특수차** 운전 경력은 **제외**

\*\* 경력증명서에 **근무기간(연월일)·상근여부(주당 근무시간)·담당업무·운행차종(인승)**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**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**
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
\*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
- 군 경력의 경우,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인원수송을 위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전한 경력\*이 '군 운전경력확인서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)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(보병,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) \*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 경력은 제외
-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폐업사실증명서·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·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고, 별도의 증빙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해 경력을 증명해야 경력 인정

### ○ 자격증

- 자동차 정비·검사 관련 자격증\*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해 인정
- \* 관련 자격증: 차량기술사, 자동차정비(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), 구 자동차 검사(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)

### ○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

-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**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해당하는 실적에 한해** 이수 실적  
(유효기간 불명료시 교육 이수 불인정)

## 5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가능
- 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관련 분야 근무경력, 무사고이력 등

### ② 2차시험 : 면접시험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,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

## 6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3.4.11.(화)~'23.4.21.(금)	▪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
원서접수	'23.4.11.(화)~'23.4.21.(금)	▪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우편, 방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5.19.(금) 예정	▪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3.5.24.(수) 예정	▪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3.5.30.(화) 예정	▪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(<http://www.opm.go.kr>)의 알림마당-공지사항에 게시

## 7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3.4.11.(화) ~ '23.4.21.(금), 09:00 ~ 18:00
  - ※ 접수번호(응시번호)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  - ※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**09:00 ~ 18:00**(12:00 ~ 13:00 제외) 내에만 가능하나,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방문접수 지양
 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, 봉투 겉면에 "응시분야 및 직급" 기재
 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접 수 처 : 국무조정실 인사과
  - (주 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
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
  - (우편번호) 30107
- 응 시 표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

## 8. 제출서류 (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)

### < 공통사항 : 필수 제출 >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2호 서식>
  - ※ 정부수입인지(5,000원) 첨부
  - ※ 응시수수료 면제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'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' 또는 '차상위계층 확인서', '한부모가족 증명서'를 첨부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3호 서식>
  - ※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기재된 경력사항은 **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**을 유의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4호 서식>
  - ※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은 자유)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5호 서식>
  - ※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은 자유)
- ⑤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<별지 6호 서식>
- ⑦ 개인정보 제공(이용) 동의서 <별지 7호 서식>

### < 개별사항 : 해당자만 제출 >

-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<별지 8호 서식>
  - ※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
  - ※ **근무기간(연월일), 직위, 담당업무, 운행차종(인승), 상근여부(주당 근무시간)** 반드시 기재
  - ※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  - ※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(권고)
  - ※ 재직증명서 제출 시, 경력기간 산정(우대요건)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
  - ※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예-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하여야 하며, 검증을 위해 '폐업사실증명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', '소득금액 증명서'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
② 운전경력증명서 1부

※ **공고일 이후**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

※ 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 교통사고 : **전체기간 조회**

※ 공고일 이전 발행분,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시 **해당 항목 0점 처리**

③ 자동차 정비·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1부

④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(**수료증상 유효기간 명시**)

⑤ 주민등록 초본 1부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)

## 9. 유의사항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.go.kr](http://www.mpm.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경력,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,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(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), 반환청구서(별지서식 9호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

※ 메일주소 : opminsa@korea.kr

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'23.5.30(화)~'23. 6. 1.(목)

-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(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)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,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.
-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됩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(※ 채용 담당자 : 044-200-2801)